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사전의무교육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re-Compulsory Education System for Companion Animal Nurture

이진홍*
Lee, Jin-Hong
장교식**
Jang, Kyo-Sik

목차

- | | |
|--------------------|---------------------|
| I. 서론 | IV. 사전의무교육제도의 도입 방안 |
| II. 반려동물의 양육 및 현황 | V. 결론 |
| III. 외국법제 분석 및 시사점 | |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1,000만으로 4가구 중 1가구가 기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문화적 측면의 삶의 변화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양육인구의 증가와 산업의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유기 및 학대 등의 관리 및 보호에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사전의무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해마다 늘어나는 유기동물은 12만 마리 이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학대에 대한 신고도 증가하고 있지만 가벼운 처벌로 인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반려동물을 법률이나 사람들의 인식에 있어 ‘인간과 정신적 유대와 애정 즉,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더불어

DOI: 10.35148/ilsilr.2019.44.237

투고일: 2019. 9. 22. / 심사의뢰일: 2019. 10. 1. / 게재확정일: 2019. 10. 17.

* 주저자, 건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경찰학과 교수, 법학박사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Science, 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Konkuk University

** 교신저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Professor, Law School, Konkuk University

살아가는 생명으로서의 동물'이 아닌 장난감 등의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국내 법제는 동물보호법을 중심으로 수의사법 등 다수의 개별법률에서 반려동물의 범위, 관리와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과태료 등의 처벌 중심의 법제이고, 지자체는 위임규정에 따른 조례와 몇몇의 개별조례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반려동물이 재물이 아닌 생명체로서 차별받지 않게 강력한 법제의 정비와 시민의식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반려동물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 자격과 교육 그리고 핏기 및 실기 등의 테스트를 통과해야하며 심지어는 자격증까지 취득하여야 한다. 또한 양육 전과 후로 나누어 철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책임과 의무의 강조를 위해 세금까지도 부과한다.

따라서 국내의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반려동물이 재물이 아닌 생명체로서 차별받지 않는 법제와 시민의식 함양에 노력해야한다. 그 방안으로는 첫째,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사전의무교육제도의 법제화 실현, 둘째, 전문교육기관 도입, 셋째, 전담인력 확충, 넷째,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강화, 다섯째, 반려동물의 생애주기에 맞춘 전반적인 교육 등이다.

[주제어] 반려동물, 의무교육, 양육, 유기, 동물보호법

I. 서론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국민 중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의 비중은 23.7%로 4가구 중 1가구로 조사되었으며,¹⁾ 그 중 반려견(개)은 76%, 반려묘(고양이)는 16.6%로 전체의 약 93%가 개와 고양이를 양육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려동물의 양육은 동물로서 사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정신적 유대와 애정 즉,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생명인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문화적·산업적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 펫코노미, 펫팸족, 펫티켓, 펫로스증후군, 덩펫족, 뷰니멀족, TYDTWD(직장에 반려견을 데리고 가는 날), 펫파라치, 펫미족, 땡땡이 등의 신조어(새로운 용어)가 등장하는 등 모든 인간의 삶에 반려동물이 연관되어 있고, 반려동물과 함께

1) KB경영연구소의 2018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25.1%로 조사, KB경영연구소, 2018 반려동물보고서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과 양육실태, 2018, 5쪽.

하는 삶으로 펜션, 놀이터, 유치원 등의 반려동물 전용시설이 생길 만큼 문화적 측면도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산업들에도 전문화·고급화²⁾ 등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반려동물 전문 양육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스타트업, 반려동물의 질병·사고에 대비한 펫보험, 반려묘의 배설물을 자동으로 청소해주는 스마트 화장실, 집안에 홀로 남겨진 반려동물을 위한 인공지능 놀이기구, 반려동물 공기청정기를 비롯해 반려동물의 장례토텔서비스 등 반려동물의 생애주기에 따라 입양에서 장례까지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14.1%씩 성장하였으며³⁾ 2020년에는 미래전략산업⁴⁾ 중 하나로 6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⁵⁾

이러한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 증가와 관련 사회적·문화적·산업적인 큰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과 관련한 유기 및 학대, 교육 부재, 동물 미등록, 동물실험 등 많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부산시 해운대구 오피스텔 근처에서는 죽은 포메라니아 3마리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우울증 증세를 보인 20대 여성이 자신의 반려견 3마리를 18층 창문으로 던져 숨진 사고⁶⁾가 발생하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유기·파양·학대·살생 등의 반려동물 관련 범죄가 잇달아 발생⁷⁾하고 있으며, 해마다 유기동물 12만 마리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처럼 반려동물 양육 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교육 및 자격제도 등이 전무한 상태로 반려동물 양육 전 교육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양육 전 지식을 습득하지 않은 보호자가 24%, 유기 충동을 경험한 소유자는 42.6%에 달했다. 이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반려동물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많은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입양 환경을 점검하지 못하는 현실도 충동적인 반려동물 구매와 입양을 방치하여 유기와 파양 및 학대를 부추기고 있다. 또한 유기동

2) 반려동물 시장은 웰빙과 케어의 중심으로 갈수록 고급화되고 다양해졌다. 김민정, 애완동물 반려동물과 버려지는 동물, 인간소외, 문화과학 제76호, 문화과학사, 2013, 131쪽.

3) 지인배/김현중/김원태/서강철,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79쪽.

4) 허민영, 반려동물 시장에서의 소비자지향성 강화 방안 연구, 정책연구 16-14, 한국소비자원, 201, 5쪽.

5) 법보신문, “반려견 단비의 49재”,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953>>, 검색일: 2019.02.18.

6) 아시아 경제, “잇따른 반려동물 범죄 -입양 교육 시급하다”, <<http://view.asia.co.kr/news/view.htm?idxno=2019010921410173787>>, 검색일: 2019.01.10.

7) 경남도민일보, “반려동물 키울 때도 자격증 필요해”,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86949>>, 검색일: 2019.01.15.

물의 숫자가 늘면서 이를 보호하는 비용도 대폭 상승하였다. 지난해 전국 298개 보호소를 운영하면서 전년보다 28.9% 증가한 200억4,000만원이 투입되는 등 꾸준히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⁸⁾

따라서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양육(구입, 입양, 분양, 사전, 사후 등) 시에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잘 정책되어 있는 외국과 같이 의무교육이나 시험을 통한 자격증 제도 즉, 사전의무교육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에 반려동물 양육자의 책임의식을 위하여 반려동물 양육 시 일정 수준의 교육이수 의무화 설문조사에 83.4%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⁹⁾

이와 관련하여 일전에 동물을 등록하려는 반려인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가 국회에 계류된 채 논의가 없는 상황이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성숙한 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반려견 및 소유자 교육을 강화¹⁰⁾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유기와 파양 및 학대 금지와 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사전의무교육제도 도입’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제고와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반려동물의 양육 및 현황

1. 반려동물의 정의

반려동물이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여 사람의 장난감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의미에서 반려동물이라고 한다.¹¹⁾

8) 반려동물 뉴스, “‘노트펫’, 지난해 유실·유기동물 12만 마리..역대 최대”, <https://www.notepet.co.kr/news/article/article_view/?idx=16324&groupCode=AB120AD120>, 검색일: 2019.07.22.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2017, 83쪽.

10)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 수립 추진, <[http://www.mafra.go.kr/mafra/293/subview.do?enc=Zm5jdDF8QEB8JTJGmJzJTJGbWFmcmElMkY2OCUyRjMyMDg2NiUyRmFydGNsVmllldy5kbyUzRg%3D%3D](http://www.mafra.go.kr/mafra/293/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FmcmElMkY2OCUyRjMyMDg2NiUyRmFydGNsVmllldy5kbyUzRg%3D%3D)>, 검색일: 2019.07.05.

반려동물의 정의에 대한 관련 법률은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이 있고,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범위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개와 고양이는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¹²⁾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특징적으로 프랑스의 경우 ‘인간이 즐거움을 위하여 보유하거나 보유하게 된 모든 동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국가마다 그 범위를 달리하여 차이가 있다.¹³⁾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란 단어는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과학아카데미가 동물 행동학자로 노벨상 수상자인 K.로렌츠의 80세 탄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최한 ‘사람과 애완동물의 관계(the human-pet relationship)’라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¹⁴⁾ 반려동물의 표현은 장난감이나 유희로 표현되었던 과거의 애완동물(Pet animal)에서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로의 반려동물(Companion animal)로 표현이 변화되었다.

반려동물을 대하는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세계적 국민 소득수준에 따라 반려동물 문화 발전 단계는 GNP 1만불에는 반려동물 문화의 시작, GNP 2만불에는 반려동물 문화 발전, GNP 3만불에는 동물의 인격화로 되어가는 문화의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반려동물은 ‘인간과 정서적 유대와 애정 즉,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장난감 등의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서의 동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마하트마 간디에 의하면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고 하였다. 동물에 대한 보호 및 복지에 대한 법의 수준으로 그 나라의 사회적·문화적 수준을 평가하기도 한다.¹⁵⁾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을

1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94&ccfNo=1&cciNo=1&cnpClsNo=>1>>, 검색일: 2019.07.21.

12) 정삼철, 충북지역의 반려동물산업 육성전략 연구, 기본과제 2017-06, 충북연구원, 2017, 6쪽.

13) 김현희, 반려동물관련산업법 제정을 위한 기반마련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7, 45쪽.

14) 국립축산과학원, <http://www.nias.go.kr/companion/new_petBoard.do?cmCode=M170718155107250>, 검색일: 2019.07.21.

15) 함태성, “우리나라 동물법의 현황 및 진단 그리고 향후 과제”, 법과사회 제60권, 2019, 360쪽.

인간화(humanization)하여 ‘가족’으로 생각할 정도로 반려동물을 사람처럼 대우¹⁶⁾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지위가 많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현재 법률상 반려동물은 권리(소유권)의 객체로서 ‘물건’에 해당한다. 민법상 제98조(물건의 정의)에서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52조(무주물의 귀속)에서 제3항은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특히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에 있어서도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반려동물이 ‘물건’이라는 것에 힘을 실고 있다. 이는 점유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라는 뜻으로 ‘동물의 점유자’의 뜻이 동물이라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으로 해석되어진다.

형법상에서도 동물은 재물에 해당되어 타인 소유의 동물을 확대한 경우에는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재물손괴죄가 성립되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은 재물로서 인간이 소유하는 재산 및 물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에서 재물 즉, 재산 및 물건적인 측면만 강조하게 되면 타인 소유의 동물을 확대한 경우 이외의 자기 소유의 동물에 대한 확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에도 해당되지 않은 허점으로 인해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범리구성에 있어 민법, 동물보호법상의 형사제재에 대한 규정간의 불일치라는 문제점도 나타나게 된다.

다른 관점에서는 하급심 판례로 반려동물의 치상의 경우 일반의 물건과 달리 소유자가 그 반려동물과의 정신적인 유대와 애정을 나누기 위해 소유하고, 생명을 가진 동물이라는 점에서 반려동물의 교환가격보다 높은 치료비를 지출하고도 치료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비추어 인정될 수 있을만한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인정한 판례도 있다.¹⁷⁾ 이는 반려동물을 단순히 인간 소유의 재산 및 물건이 아닌 하나의 생명으로 본 판례이다.

따라서 현행 법률에서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재물 즉, 재산 및 물건으로 보는 시각을 탈피하여 동물생명의 존엄성과 동물보호 및 복지적 측면에서 보아 동물권 등의 동물에 대한 고양된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피 하다면 단순히 반려동물을 재물로 보는 동물의 지위를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16) Franchise Help, Pet Care Industry Analysis 2017 -Cost & Trend, 2017, <<https://www.franchisehelp.com/industry-reports/pet-care-industry-analysis-2018-cost-trends/>>, 검색일: 2019.07.21.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7. 14. 선고 2010가단414531 판결; 윤익준, “동물의 지위에 대한 법정책적 담론 -현행법상 동물의 보호와 동물복지를 중심으로-”, 법과정책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2016, 47쪽.

구별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

3. 반려동물의 양육

반려동물의 양육이란 ‘인간과 정신적 유대와 애정 즉,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장난감 등의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서의 동물을 ‘기르는 것’, ‘보살피서 자라게 한다’ 등의 의미를 갖는데 보통 ‘양육’은 인간에게 사용하고 동물의 경우는 ‘사육’의 의미를 사용하지만 현 시대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고려할 때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 등의 의미로 양육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반려동물의 양육에는 입양,¹⁸⁾ 구입,¹⁹⁾ 분양²⁰⁾ 등의 방법이 있는데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데려오는 입양, 동물판매업소에서 데려오는 구입, 일반가정집 등 개인에게서 데려오는 분양이 있다. 반려동물의 입양은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데려오는 것을 말한다. 즉, 공공장소에서 구조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반려동물은 그 소유권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므로 일반인이 입양할 수 있다.²¹⁾ 이 밖에도 안락사 직전의 임시보호를 통해 데려오는 경우, 버려진 동물을 데려오는 경우 등이 있다. 반려동물의 입양은 법률관계를 만드는 신분행위는 아니지만 함께 살아가는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구입이라는 단어가 반려인들에게는 불쾌할 수 있지만 현재 반려동물의 법적지위는 물건으로 민법상 재산에 해당되는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반려동물의 구입은 일반 분양센터, 동물병원, 개인 간의 거래, 길거리 판매자,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데려오는 것을 말한다. 반려동물 분양은 친구나 친지, 또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일반가정집 등에서 동물이 낳은 것을 데려오는 경우를 말한다.

반려동물의 주요 양육 경로는 주변사람 주변 사람(59.4%)이나 분양숍(25.9%)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육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다른 경로에 비해 주변 사람을 통해 분양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연령대별 주변 사람을 통해 분양하는 비율은 20대가 52.8%, 40대가 63.0%, 그리고 60대 이상은 73.0%로 나타났다.²²⁾

18) 입양의 사전적 의미는 ‘자연의 혈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과 같이 법적으로 의제하는 제도’ 또는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친부모와 친자와 사이와 같은 관계를 만드는 신분행위’를 말한다.

19) 구입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 따위를 사들임’을 의미한다.

20) 분양의 사전적 의미는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갈라서 여럿에게 나누어 줌’을 의미한다.

21) 동물보호법 제20조 및 제21조 제1항

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2017, 87쪽.

4. 반려동물의 유기와 파양 및 학대

해마다 유기동물이 늘어 2018년 기준 12만 마리 이상이 발생하면서 매년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²³⁾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18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유실·유기동물은 지난해 보다 18%나 급증하였다. 또한 유기동물의 숫자가 늘면서 이를 보호하는 비용도 전년 대비 28.9% 증가한 200억4,000만원이 투입되었다.²⁴⁾ 경남지역을 예로 들면 유기·유실동물은 2014년 5,223마리, 2015년 5,609마리, 2016년 6,596마리, 2017년 7,941마리, 2018년 10월 기준 9,698마리 등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에 넘어서고 있지만 동물을 양육 및 입양하기 전 반드시 선행돼야 할 반려동물 양육 및 입양 교육이 전무하여 많은 동물이 버려지고 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데에 있어 양육지식을 습득하지 못해 유기충동을 경험한 소유자는 66.6%에 달했다.²⁵⁾

반려동물 파양의 원인으로는 경제, 환경, 질병, 가족, 문제행동 등의 다양한 이유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장 큰 원인으로는 대부분이 반려인의 부주의와 관리소홀이라고 할 수 있다. 반려동물의 파양에 대한 통계자료는 따로 조사 되어 있지 않지만 동물단체는 입양된 반려동물 중 10%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2017년 사이 동물학대 신고 575건 중 처벌 받은 사건은 70건에 불과했다. 그중 68건은 벌금형이었으며 2건은 집행유예로 그쳤다.²⁶⁾ 이는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 지식 교육의 부재와 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하여 쉽게 살 수 있고, 처벌이 가벼워 벌금형이 많고, 입양 환경을 점검하지 못하는 현실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²⁷⁾

23)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18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12만1,077마리의 유기동물이 보호조치 됐다.

24) 반려동물 뉴스, “‘노트펫’, 지난해 유실·유기동물 12만 마리..역대 최대”, <https://www.notepet.com.kr/news/article/article_view/?idx=16324&groupCode=AB120AD120>, 검색일: 2019.07.22.

25) 경남도민일보, “반려동물 키울 때도 자격증 필요해”,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86949>>, 검색일: 2019.01.15.

26) 아시아경제, “‘고양이 자두 살해범 강력 처벌하라’ 동물학대 ‘숨방방이 처벌’ 개선될까”,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72415423869864>>, 검색일: 2019.07.25.

27) 경남도민일보, “반려동물 키울 때도 자격증 필요해”,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86949>>, 검색일: 2019.01.15.

4.1 반려동물의 유기 및 파양

반려동물의 유기²⁸⁾는 ‘함께 생활하던 반려동물을 보호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내다 버리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교육 부재, 병 들, 양육비용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여름 휴가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동물등록제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전환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유기 및 유실된 반려동물의 구조 및 보호의 비용을 포함한 운용비용은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작년보다 28.9%나 증가하는 실정이다.²⁹⁾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이유는 사전 교육 등이 부재하여 반려동물의 행동패턴을 숙지하지 못하고 배변 및 소음 등 다양한 문제행동에 대한 준비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다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유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이유이다. 현행법상 반려견이 3개월령 이상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실제 반려견 등록율은 33.5%에 그치고 있어 유기에 대한 비율이 감소하고 있지 않다.³⁰⁾

매년 유기동물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발생을 예방하는 방안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8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동물을 버리는 사람의 처벌 강화(39.8%)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미등록한 소유자의 처벌 강화(31.0%), 반려동물 입양절차를 까다롭게 해야(16.5%), 동물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8.3%), 중성화 수술 등 개체 수 조절에 필요한 비용 정부 일부 지원(4.3%)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의 양육층은 비양육층에 비해 유기자의 처벌, 사업규제, 정부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답한 비율이, 비양육층은 소유자 처벌강화를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³¹⁾ 하지만 이 밖에도 반려동물 관리 및 행정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업무는 과중하다는 것이 원인으로 나타나며, 이를 민간보호단체와 시민들의 자발적 봉사로 공공부분의 빈 공간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³²⁾

28) 유기(遺棄)의 사전적 의미는 ‘내다 버림’을 의미하며, 법률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종래의 보호를 거부하여, 그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두는 일’을 의미한다.

29) 대전일보, “지난해 유기 유실 동물 12만 마리...20%는 안락사당해”, <http://www.daeje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379628>, 검색일: 2019.07.22.

30) 경남도민일보, “반려동물 키울 때도 자격증 필요해”,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86949>>, 검색일: 2019.01.15.

31)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 2018, 68쪽.

32) 유기영, 서울시 반려동물센터 도입방안, 정책리포트 제222호, 서울연구원, 2017, 10쪽.

반려동물의 파양³³⁾은 ‘양육하기 위해 입양해 온 반려동물을 다시 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유기와는 다른 개념이지만 그 이유는 일맥상통한다. 한 예로 대학가 원룸에 거주하는 반려인은 최근 반려묘가 밤마다 벽을 긁으며 울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매일 밤잠을 설치 결국 반려묘를 원래 입양했던 민간 동물분양업체에 되돌려 보내 파양했다. 반려인은 “쓰쓸했지만 견딜 수가 없어서 파양을 결심했다”며 “고양이에 대한 기본 지식 없이 입양을 결정했던 게 문제였던 것 같다”고 자책했다.³⁴⁾ 이처럼 가장 큰 원인으로 반려동물을 양육하기 전에 반려동물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4.2 반려동물 학대

반려동물의 학대³⁵⁾는 반려동물의 보호·복지를 해치는 것으로 신체적·정서적·심리적·성적 학대 등이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 사례로는 경기도 길거리에서 벌어진 생후 3개월 된 강아지 수간 사건, 충남에서 벌어진 강아지의 온몸에 페인트를 칠한 사건, 서울에서 벌어진 기르던 고양이를 잔인하게 수차례 내려치고 발로 밟아 죽인 사건, 강원도에서 벌어진 강아지가 식분증(자신의 배설물을 먹는 증상)을 앓는다고 환부를 요구했지만 솥에서 이를 거절하자 강아지를 집어 던진 사건 등등 알려지지 않은 사건까지 하면 학대가 일상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 범죄가 더욱 심각한 것은 학대범이 ‘정신적인 문제’ 또는 ‘개인이 벌인 사건’으로 치부하기에는 반려동물 학대가 인간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³⁶⁾ 또한 이러한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는 동물보호법상 2년 이하의

33) 파양의 사전적 의미는 ‘양자 관계의 인연을 끊다’를 의미한다.

34) 서울신문, “동물 입양 교육, 배워서 개 주자”,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109017015#csidx0376e9f86484f91997a738ec43054af>>, 검색일: 2019.01.08.

35) 학대의 사전적 의미는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함’, ‘강자의 약자에 대한 과혹한 대우’ 등을 의미하며, 그 종류에는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신체에 상해나 통증을 가하는 신체적 학대, 공갈·모욕·위압 등의 언어 또는 비언어적 수단으로 정서적 또는 심리적 고통을 의도적으로 생기게 하는 정서적·심리적 학대, 의도적 또는 결과적으로 치료 제공자가 치료 의무를 하지 않는 방임, 본인과의 합의 없이 성적 접촉을 하는 성적학대 등이 있다.

36) 전북일보, “동물 학대 늘어나는 사회, 길고양이 급식소가 반가운 이유”,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54718&sc_section_code=S1N8>, 검색일: 2019.07.27.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그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확대로 인해 실제 징역이나 벌금이 가해지는 사례가 극히 적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강력한 법의 제·개정 및 집행과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및 복지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

5. 반려동물의 법제

반려동물과 관련한 법제는 동물보호법을 중심으로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등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수의사법, 사료관리법 이외에도 민법, 형법, 도시공원법,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폐기물관리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의 다수의 개별 법률과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의사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개와 고양이는 공통적으로 포함하여 그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에 대하여 가장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는 법이며 제1조(목적)에 따라 동물에 대한 확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관리와 책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수의사법에서 동물등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형법, 민법, 경범죄처벌법에서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민사책임과 책임면제사유, 처벌과 범칙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등이 반려동물의 관리 및 책임에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규정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관련 법제의 특징은 처벌 중심의 법제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올해부터 맹견을 키우는 반려인은 외출할 때 반려견에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³⁷⁾

37) 서울신문,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109017015#csidx0e4ecca779a9c4e83a1fc8731e74dfe>>, 검색일: 2019.07.21.

반려동물과 관련한 지자체의 조례는 동물보호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광역시·도 동물 보호 조례,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개별 조례로는 동물보호 조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야생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III. 외국법제 분석 및 시사점

국내 반려인구는 1,000만을 상회하고 4가구당 1가구가 함께 할 정도로 발전 및 증가하고 있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나 보호 및 복지를 위해 양육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을 양육함에 있어 단순히 재물이 아닌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으로서 사람을 양육하는 까다로운 절차에 준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교육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에서 여전히 계류 중이며 법적 근거가 있는 국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실시하는 입양자 교육은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없는 상황으로 국내에는 반려동물의 양육을 위한 의무교육체계는 없는 것이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 법제의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1. 영국

영국은 2015년 기준 전체가구의 47%인 1천3백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에 있어 구입보다는 입양이나 분양이 대부분으로 50% 이상이 지인으로부터나 동물구조센터에서 얻고 있고 솅 등의 업체를 통한 구매는 20% 수준이다. 이처럼 영국은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이 가장 발달된 나라이다. 또한 영국은 동물보호에 있어 약 200년이라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나라로 강력한 법정정과 함께 동물학대에 대한 집행, 동물보호소에 대한 운영, 동물등록제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양육인에 대한 엄격한 기준 등을 법에 명시하였다.³⁸⁾

38) 영국 입법정보, <<https://www.legislation.gov.uk/>>, 검색일: 2019.07.23.

동물복지의 선도국가로 손꼽히는 영국은 1822년 제정된 ‘마틴법’이 세계최초의 동물 보호법이며 이 법을 시작으로 동물보호의 선두 국가가 되었다.³⁹⁾ 그 후 다양한 동물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으며 현재까지 이어지는 현행 동물보호법의 토대는 1911년 제정한 동물보호법으로 동물 학대 방지 등의 문제에 국한 하지 않고 복지 문제까지 다룬 동물복지법을 1996년에 공표할 만큼 동물보호의 역사가 깊다.

영국은 특히 동물보호에 ‘관리의무’ 조항을 통해 ‘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누구나 동물 보호가 의무’라는 내용까지 마련하였으며 이를 소홀히 여기면 최고 징역 1년과 약 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였다. 또한 지난 2016년부터 반려동물을 양육하고자 할 경우 동물의 몸에 마이크로 칩을 삽입하는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파운드(약 7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⁴⁰⁾ 그리고 반려동물 관리는 위험견법에 따라 목줄, 입마개 미착용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천파운드 이하의 벌금조치를 취하고 있다.⁴¹⁾

영국은 반려동물의 양육에 있어 동물학대에 대한 집행 등의 강력한 법제정과 양육인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여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이 가장 발달된 나라이다. 또한 동물보호 및 복지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징역과 벌금까지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강력한 의무사항 등의 법제정과 징역 등의 제재 수단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사전의무교육제도를 법제화 시켜야 하겠다.

2. 독일

독일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약 200년이라는 동물보호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전체 인구의 38%를 차지하고 있다.⁴²⁾ 특히 1990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법조문을 민법에 명시하였고, 동물보호법 제1조 제1항에는 ‘동물과 인간은 이세상의 동등한 창조물이다’라고 규정하여 차별이 없음을 강조하였다.⁴³⁾

39) UPI뉴스, “세계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만든 영국”, <<https://www.upinews.kr/news/newsview.php?ncode=1065591243800395>>, 검색일: 2018.08.30.

40) 아시아 경제, “잇따른 반려동물 범죄 - 입양 교육 시급하다”, <<http://view.asia.co.kr/news/view.htm?idxno=2019010921410173787>>, 검색일: 2019.01.10.

41) 정삼철, 충북지역의 반려동물산업 육성전략 연구, 기본과제 2017-06, 충북연구원, 2017, 46쪽.

42) 농협중앙회, 반려동물 관련산업 시장동향과 전망, 2016, 32쪽.

독일은 동물보호법⁴⁴⁾상 아무나 개를 키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사항으로 18세 이상이 되어야만 양육할 수 있는데 이는 적절히 반려동물을 통제하고 관리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양육 가능한 마리 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종류에 따라 세무서에 신고해 세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그리고 반려동물의 매매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보호소를 통한 입양방법으로만 동물을 양육할 수 있게 제도화 하고 반려인의 책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독일에서 반려동물의 양육을 희망할 경우에는 가족전원이 일정기간 동안 총 3회에 걸쳐 관련기관에 방문하여 기본상식과 방법을 배우고 반려동물을 통제하고 관리하여 키울 수 있는 훈련 교육을 이수 후 간단한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 반려동물의 양육 및 입양을 허용하고 있다.⁴⁵⁾

특히, 독일 니더작센주는 2011년 7월부터 반려동물의 크기, 품종에 상관없이 모든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자격증 시험 시행하여 2차에 걸친 필기 및 실기 시험 통과해야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다. 1차 필기시험에서는 ‘개의 건강’ ‘개와 법’ 등 입양 전 알아야 할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익힐 것을 요구하고 2차에서는 실기를 통해 심사한다. 또한 입양 후 1년 이내에 치러야 하는 2차 시험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반려견과 견주의 대처능력을 테스트한다. 이로 인해 현재 독일의 반려견 파양 비율은 2% 수준이다.⁴⁶⁾ 그리고 무책임하게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원래는 19세기 광견병 전염을 막기 위해 개체 수 제한 용도로 만들었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⁴⁷⁾

독일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동물보호에 대한 역사가 깊은 나라이다. 일찍이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인간과 동등한 창조물로 차별이 없음을 법에 명시하였다. 또한 반려동물을 아무나 양육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책임을 최우선으로 하였다. 그리고 양육을 희망할 경우 필기와 실기의 테스트를 통과해야하며 양육 전과 양육 후로 나누어 철저한 심사를

43) 독일 동물보호법 제1조, Tierschutzgesetz, Erster Abschnitt Grundsatz, § 1 Zweck dieses Gesetzes ist es, aus der Verantwortung des Menschen für das Tier als Mitgeschöpf dessen Leben und Wohlbefinden zu schützen. Niemand darf einem Tier ohne vernünftigen Grund Schmerzen, Leiden oder Schäden zufügen. ; 허민영, 반려동물 시장에서의 소비자지향성 강화 방안 연구, 정책연구 16-14, 한국소비자원, 2016, 52쪽.

44) 독일 동물보호법, <<https://www.gesetze-im-internet.de/tierschg/BJNR012770972.html>>, 검색일: 2019.07.26

45) 정삼철, 앞의 기본과제, 47쪽.

46) 경남도민일보, “반려동물 키울 때도 자격증 필요해”,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86949>>, 검색일: 2019.01.15.

47) 중앙일보, “유기견 안락사 없는 독일...개가 세금·버스비도 낸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313752>>, 검색일: 2019.01.23.

통과해야지만 양육할 수 있다. 또한 세금을 부과하여 무책임하게 양육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우리나라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이 재물이 아닌 생명체로서 차별받지 않게 해야 하고, 사전의무교육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사후까지 관리해야 한다. 또한 세금 부과 등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강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일본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반려동물에 대한 역사가 20년 정도 빠르다고 볼 수 있는데 2014년에 벌써 전체가구 중 27.4%의 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으며, 관련 시장의 규모도 약 16조원을 넘어서 이는 출판시장과 화장품시장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한 중앙정부에 반려동물 담당 직원이 6명 이상이 있으며 지자체별로도 반려동물 담당직원이 있어 우리와는 다른 규모의 정책을 펴고 있다.⁴⁸⁾ 일본의 동물복지제도는 1973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이 시발점으로 1999년 동물학대방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동물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⁴⁹⁾

일본은 반려동물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입양부터 등록까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양육 전 100여 개의 질문에 꼼꼼히 답변을 써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반려인의 거주지와 직업,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일평균 시간, 거주지 환경 등을 기재해야 한다.⁵⁰⁾ 입양 등 양육 후에는 30일 내에 반려인 개인정보와 함께 반려견 종과 성별, 이름과 털 색깔, 기타 신체 특이사항 등을 기재해 거주지 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다.⁵¹⁾

일본은 중앙정부에 반려동물과 관련한 전담 직원이 6명 이상이 배치되어 있고, 지자체 별로 담당직원이 배치되어 관리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양육 전과 양육 후로 나누어 100여개의 질문에 꼼꼼히 답변하여야 한다. 양육 전에는 반려동물을 보호 및 관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함께 할 수 있는 일평균 시간, 거주지 환경 등을 답변하고, 양육 후에는 30일 내에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정보를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48) 데일리벳, “해외 주요 동물복지 선진국의 유기동물 정책”, <<http://www.dailyvet.co.kr/news/animalwelfare/40729>>, 검색일: 2018.06.28.

49) 정삼철, 충북지역의 반려동물산업 육성전략 연구, 기본과제 2017-06, 충북연구원, 2017, 44쪽.

50) 경남도민일보, “반려동물 키울 때도 자격증 필요해”,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86949>>, 검색일: 2019.01.15.

51) 아시아 경제, “잇따른 반려동물 범죄 - 입양 교육 시급하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10921410173787>>, 검색일: 2019.01.10.

한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 반려동물 전담부서와 직원이 배치되어 있지만 각 지자체별로는 미비한 실정이라 지자체별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양육 전 후로 나누어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및 관리의 충분한 여부와 환경을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스위스

스위스는 반려동물 양육에 있어 특별한 국가이다. 다양한 조항을 법률로 명시할 뿐만 아니라 의무교육을 실시하다 2017년 연방법에서는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스위스에서 반려동물들이 사람을 무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한 후 2008년에 도입되었는데 이 제도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며, 5명 중 1명은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교육 이수자와 미이수자 사이의 차이가 증명되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무교육을 계속하고자 하는 주(州)에서는 이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⁵²⁾

그래서 연방 상원에 이어 하원은 「동물보호에 관한 법률명령」의 ‘반려견 주인에게 필요한 조건(제68조)’을 포함한 두 개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여 지금까지 한 번도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는 사람도 이제는 이론수업과 실습을 이수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게 되었으며, 새로운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던 실습도 이제 더 이상 의무사항이 아니다.⁵³⁾ 이에 대해 폐지를 반대하는 알랭 베르세 내무부장은 “무뎠혀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운전면허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같다”며 폐지가 아닌 개정을 주장하였다.⁵⁴⁾ 또한 스위스의 106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동물보호법은 말과 소의 운동법과 돼지, 금붕어 등 반려동물을 ‘혼자 놔두면 안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돼지, 고양이 심지어 어류의 권리까지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스위스는 반려동물 양육 전 예비 반려인이 반드시 반려동물 학교에서 매주 한 번씩 총 10시간 이상 이론과 실기 수업의 사전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하고 이후 별도의 필기시

52) 세계법제정보센터, 스위스 반려견 주인 대상 의무교육 폐지, <http://world.moleg.go.kr/web/dta/lgs/TrendReadPage.do?CTS_SEQ=42963&AST_SEQ=47&ETC=>>, 검색일: 2019.07.01.

53)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ww.admin.ch/opc/fr/official-compilation/2016/4871.pdf>>, 검색일: 2019.07.01.

54) LE TEMPS, Les détenteurs de chiens sont libérés des cours, <<https://www.letemps.ch/suisse/detenteurs-chiens-liberes-cours>>, 검색일: 2019.01.23.

험을 통과해야만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그 교육 내용으로는 기본 명령법, 산책하는 법, 행동 교정법 등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반려동물은 사람과 어울리는 법을 사람은 반려동물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에 있어 스위스는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사전의무교육제도 도입’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다 연방법에서 폐지하고 지방 자치단체에서만 실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교육 이수자와 미이수자 사이의 차이가 증명되지 못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실효성 면에서 우리의 의무교육의 질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의 이수를 통해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반려동물을 양육할 수 있는 것의 전제에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는 것에 시사점이 있다.

IV. 사전의무교육제도의 도입 방안

사전의무교육제도란 반려동물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려동물의 유기 및 학대 방지를 위한 보호 및 복지 사항, 반려인의 조건과 반려동물의 양육에 대한 입양에서 장례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기본적인 지식을 교육을 받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그 범위로는 양육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도 교육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이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조화로운 세상을 추진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1. 사전의무교육제도의 법제화 실현

반려동물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의무교육제도를 통해 교육을 받도록 법제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그 범위에 있어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려고 하거나 양육하고 있는 반려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반려인의 반려동물에 대한 유기와 파양 및 학대, 반려동물의 문제행동에 의한 것인데 이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정립되지 있지 않고 또한 반려인이나 반려동물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국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를 의무로 규정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어기면 강력하게 징역과 벌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기본적 사항들을 규정하고 반려동물 양육 시 사전의무교육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 교육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는 유기동물에 한정 할 것이 아니라 전체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을 하고 있거나 원하는 반려인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의 내용은 건강 상태, 목줄 사용, 인식표 부착 외출 등 안전교육 뿐만 아니라 전염병의 예방접종 일정, 사체처리 방법, 공공 위생⁵⁵⁾ 등 생애주기별 전 분야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강력한 법제화 실현을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과 개별 법률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와 교육을 통할 할 수 있는 기본법의 제정도 함께 고려해 볼만하다.

2. 전문교육기관 도입

국내 반려동물의 양육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은 결론적으로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반려인들 또한 어떠한 교육도 받은 적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반려동물 관련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과 지인들을 활용해야한다. 심지어 혹자는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입양기관에서도 어떠한 교육도 받지 못해 초반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인터넷이나 지인을 통해 주먹구구식으로 정보를 얻는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국내에서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 입양 교육’을 진행하지만 ‘유기동물’로 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반려동물은 교육 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마저도 반려동물 입양이 대부분 민간업체나 개인 간 거래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입양자가 동물보호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반려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한다.⁵⁶⁾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의 분양 절차와 사후 관리 규정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운영자가 분양 희망자에게 건강 상태, 목줄 사용, 인식표 부착 외출 등의 교육을 진행하지만 이도 사실상 안전 교육만을 진행하고 있다.

55) 이정인, “반려동물 현황과 주요 이슈”, 이슈진단 제188호, 경기연구원, 2015, 19쪽.

56) 서울신문, “동물 입양 교육, 배워서 개 주자”,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109017015#csidx0376e9f86484f91997a738ec43054af>>, 검색일: 2019.01.08.

따라서 독일과 스위스처럼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학교 등과 같이 전문교육기관을 도입하여야 한다. 일정기간 이론과 실기 등의 교육을 통해 사람은 반려동물을 양육하기 위한 기본상식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훈련을 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반려동물은 사람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게 해야 한다.

3. 전담인력의 확충

반려동물 양육에 있어 사전의무교육을 하는 이유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반려인들이 정작 반려동물에 대해 잘 모르고 양육할 때가 잦다. 특히 반려동물을 양육할 때 주의할 점과 주로 걸리는 질병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 때가 적지 않아 상당한 비용의 발생 등의 이유로 유기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반려동물을 양육할 때 반드시 반려인의 교육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중앙정부의 전담인력과 지자체별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관리하고 있지 못하다. 중앙정부에는 전담인력이 있지만 각 지자체에는 대부분이 전담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대부분 동물보호센터에서 이루어지는데 동물보호센터에 반려동물 양육 의무교육을 전적으로 맡기기에는 열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동물보호센터는 전국 293곳(2017년 기준)에 설치된 반면 동물보호센터에 신고된 유실·유기 동물은 2017년 한 해만 10만2,593마리로 동물 관리만에도 벅찬 상황이다.

게다가 201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952만 가구 중 574만 가구가 약 870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동물보호센터 293곳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574만 가구를 교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이에 대한 인력 확보도 절실하다.

4.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강화

사람이 사람을 입양하여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입양특례법 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첫째,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둘째,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셋째,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넷째,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다섯째, 그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여섯째,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곱째,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등이다.

반려동물은 법률에서는 재물 즉, 재산 및 물건이지만 재물도 생명의 유무에 따라 구별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반려동물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양육을 위한 충분한 자금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둘째, 양육하려는 모든 가족이 동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알레르기, 반려동물의 호불호 등의 조건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본인의 생활 방식과 주거환경에 적합한 동물을 선택하였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 아파트 가정집에서 반려동물로 큰 수족관에서 길러야 하는 반려동물을 양육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넷째, 반려동물과 함께 보낼 시간이 충분히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출장이 잦다거나 함께 할 시간이 없을 때는 반려동물의 사료나 배설물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양육하기는 힘들다. 다섯째, 결혼, 임신, 육아, 출산, 유학, 이사 등 신변 변화에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장기간의 외출, 배우자의 호불호, 출산을 통한 새 생명의 면역 관계 등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섯째, 책임질 수 있는 숫자만 양육해야 한다. 집은 작는데 몇 백 마리를 양육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공간만이 문제가 아니라 금적 등 기타의 여러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독일의 경우처럼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동등한 창조물이다’ 정도는 아니더라도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 측면에서 재물 즉, 재산 및 물건으로 보는 시각을 탈피하여 반려동물을 보는 관점을 소유하는 물건에서 적어도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을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전환하는 국민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⁵⁷⁾하며 이를 통해 반려인들의 책임의식도 강화시켜야 한다.

57) 정삼철, 앞의 기본과제, 13쪽.

5.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

반려동물을 양육 시 애로사항으로 배설물, 털 등 관리가 번거롭다(43.1%), 여행가기 힘들다(37.3%), 건강에 대처가 있을 때 대처가 힘들다(36.6%), 비용이 많이 든다(32.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⁵⁸⁾ 따라서 애로사항에 대한 것을 기반으로 반려동물 양육에 있어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구체화 시켜야 하는데 그 교육 내용으로 반려동물의 생애주기에 맞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은 양육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부터 유기 및 학대 방지의 개념과 처벌 규정, 생명 유지에 필요한 사료 및 간식의 선택, 질병 및 부상 등의 치료비, 백신 및 건강검진 등의 예방비 등의 의료비용, 미용 및 의류 기타 악세사리 등의 비용, 기타 보험, 침대, 호텔, 카페 등 이용에 관한 사항 등 살아가는 전반에 걸쳐 교육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 시 생명과 환경을 존중하는 윤리적 의무를 배울 필요가 있다. 또한 사전의무교육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기본 상식, 관계법령, 훈련방법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고 연구해야 한다.

6. 사전의무교육제도를 통한 교육이수 등

반려동물의 양육을 위한 교육은 국내에서는 맹견을 양육하는 반려인에 대한 교육이나 동물보호센터에서의 입양자 교육이 전부이며 이 또한 권고에 그쳐 실질적 의무사항은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반려동물의 양육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독일, 일본, 스위스의 경우는 반려동물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가족 전원이 반려동물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고 필기와 실기의 테스트를 통과하여야 하고 자격증 시험을 봐서 통과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양육 전과 양육 후로 나누어 답변지의 답변과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을 양육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시스템과 법제가 잘 정비된 독일, 일본, 스위스 등의 외국 국가의 사례처럼 양육에 대한 사전 지식을 필기와 실기 등의 테스트를 통해 검증해야하고 나아가서는 자격증 취득까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58) KB경영연구소, 2018 반려동물보고서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과 양육실태, 2018, 38쪽.

V. 결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반려인구가 1,000만 시대로 4가구 중 1가구가 양육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에도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꾸준히 증가하여 미래전략산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반려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저출산 및 고령화가 진행되어 1인 가구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인간의 외로움⁵⁹⁾을 달래기 위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다.⁶⁰⁾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효과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하지 않는 사람보다 정서면에서 더 안정적⁶¹⁾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기 때문에 양육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인에게 반려동물은 인간 소외나 정서적 안정 등의 치료제가 아니다. 단기적으로 위안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반려동물을 기른다는 것은 현실의 장벽에 부딪치게 되어 사회적·문화적·경제적⁶²⁾ 부분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⁶³⁾

반려동물의 양육인구가 늘어날수록 유기동물의 수도 증가하여 매년 12만 마리가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사전 지식 없이 반려동물을 양육하다보니 경제적 비용, 소음, 배설물, 관리 문제 등인데 유기동물의 수가 증가할수록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호소 설치, 인력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비용도 같이 상승하게 된다.⁶⁴⁾

유기동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려인의 윤리의식 개선으로 양육 초기 반려동물의 평균 수명(10년), 나만의 위안을 위한 도구, 가족의 전체의 동의, 경제적 비용(병원, 사료 등)의 고려, 상황의 변화(임신, 이사, 유학 등)⁶⁵⁾ 등의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양육을 하지 않아야 하고, 사회적 여건의 개선으로 사후대책보다는 사전대책으로 반려

59) 대도시에 홀로 사는 외로운 현대인들을 동물원에 갇힌 동물로 비유한다. 테즈먼드 모리스, 김석희 옮김, 인간 동물원, 물병자리, 2003, 59쪽.

60)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2011년 유기동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12.

61) K. Allen, "Are pets a healthy pleasure? The influence of pets on blood pressur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2, 2003, p.236-39.

62) 동물병원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사람의 진료비보다 높은 수준이고 동물의 질병 시 부담이 커짐에 따라서 비싼 진료비는 유기동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중의 하나이다. 김성희, 반려동물 관련 소비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 13-21, 2018, 6쪽.

63) 김민정, 앞의 논문, 140쪽.

64) 길준규, "독일의 반려동물폐기법", 법학연구 제27권 제2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481쪽.

65) 조혜경, "또 다른 가족 반려동물", 寶雲 제37권, 충남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2006, 109쪽.

동물관리 방향의 전환, 사육포기동물의 인수, 사육여건을 감안한 반려동물 보유, 바른 사육능력 향상, 교육 등의 동물유기와 학대의 근본적 차단이 필요⁶⁶⁾하다.

따라서 비롯한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 및 보호⁶⁷⁾와 유기 및 학대 방지 그리고 반려인들의 올바른 양육을 위해서라도 정부 주도로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사전의무교육 이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역량만으로는 반려동물을 관리 및 보호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반려동물 양육인 뿐만 아니라 나아가 비양육인인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사전의무교육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첫째, 반려동물 사전 의무교육제도 도입을 위한 민·관·산·학 TF팀을 통해 법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강력한 법제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둘째, 반려동물의 양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을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사전의무교육을 위한 전담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넷째,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째,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섯째, 철저한 교육과 이수를 통해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나아가서는 자격증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7월 초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추진’을 발표하였다.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6대 분야(동물 소유자 인식 개선, 반려동물 관련 산업 개선, 유기·피학대 동물보호,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동물실험의 3R 원칙 구현, 동물복지 거버넌스 강화) 21대 과제를 선정⁶⁸⁾하였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사전의무교육제도의 도입도 기대해 본다.

66) 김민정, 앞의 논문, 143쪽.

67) 동물에 대한 보호는 나아가 인간에 대한 보호 측면의 외연을 확대한다는 점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조성자, “미국 반려동물 보호법제와 시사점 -미국 반려동물신탁제도를 중심으로-”, 강원법학 제53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373쪽.

68)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 수립 추진, <<http://www.mafra.go.kr/mafra/293/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ZWFnmcElMkY2OCUyRjMyMDg2NiUyRmFydGNsVmllldy5kbyUzRg%3D%3D>>, 검색일: 2019.07.05.

참고문헌

1. 단행본

데즈먼드 모리스, 김석희 옮김, 인간 동물원, 물병자리, 2003

2. 학술지

길준규, “독일의 반려동물폐기법”, 법학연구 제27권 제2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481-502쪽.

김민정, “애완동물 반려동물과 버려지는 동물, 인간소외”, 문화과학 제76호, 문화과학사, 2013, 130-149쪽.

윤익준, “동물의 지위에 대한 법정책적 담론 -현행법상 동물의 보호와 동물복지를 중심으로-”, 법과정책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2016, 37-65쪽.

조성자, “미국 반려동물 보호법제와 시사점 -미국 반려동물신탁제도를 중심으로-”, 강원 법학 제53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351-378쪽.

조혜경, “또 다른 가족 반려동물”, 寶雲 제37권, 충남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2006, 102-110쪽.

함태성, “우리나라 동물법의 현황 및 진단 그리고 향후 과제”, 법과사회 제60권, 법과사회 이론학회, 2019, 317-364쪽.

홍완식, “독일의 동물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유럽헌법연구 제25호, 유럽헌법학회, 2017, 523-544쪽.

K. Allen, “Are pets a healthy pleasure? The influence of pets on blood pressur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2, 2003, 236-239쪽.

3. 기타

김성희, 반려동물 관련 소비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 13-21, 2018.

- 김태성, 반려동물 관련산업 시장동향과 전망, 농협중앙회, 2016.
- 김현희, 반려동물관련산업법 제정을 위한 기반마련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7.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2011년 유기동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12.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대책 추진, KDI경제정보센터, 2016.
_____,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 2018.
- 유기영, “서울시 반려동물센터 도입방안”, 정책리포트 제222호, 서울연구원, 2017.
- 이정임, “반려동물 현황과 주요 이슈”, 이슈진단 제188호, 경기연구원, 2015.
- 정삼철, 충북지역의 반려동물산업 육성전략 연구, 기본과제 2017-06, 충북연구원, 2017.
- 한국농촌경제연구소,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2017.
- 허민영, 반려동물 시장에서의 소비자지향성 강화 방안 연구, 정책연구 16-14, 한국소비자
원, 2016.
- KB경영연구소, 2018 반려동물보고서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과 양육실태, 2018.
- 경남도민일보, “반려동물 키울 때도 자격증 필요해”,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86949>>, 검색일: 2019.01.15.
- 국립축산과학원, “반려동물알기”, <http://www.nias.go.kr/companion/new_petBoard.do?cmCode=M170718155107250>, 검색일: 2019.07.21.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 수립 추진”, <<http://www.mafra.go.kr/mafra/293/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WFmcmElMkY2OCUyRjMyMDg2NiUyRmFydGNsVmllldy5kbyUzRg%3D%3D>>, 검색일: 2019.07.05.
- 대전일보, “지난해 유기 유실 동물 12만 마리...20%는 안락사당해”,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379628>, 검색일: 2019.07.22.
- 데일리벳, “해외 주요 동물복지 선진국의 유기동물 정책”, <<http://www.dailyvet.co.kr/news/animalwelfare/40729>>, 검색일: 2018.06.28.
- 독일 동물보호법, <<https://www.gesetze-im-internet.de/tierschg/BJNR012770972.html>>, 검색
일: 2019.07.26.
- 반려동물 뉴스 “‘노트펫’, “지난해 유실·유기동물 12만 마리..역대 최대””, <https://www.notepet.co.kr/news/article/article_view/?idx=16324&groupCode=AB120AD120>, 검색
일: 2019.07.22.
- 법보신문, “반려견 단비의 49재”,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

203953>, 검색일: 2019.02.18.

서울신문, “동물 입양 교육, 배워서 개 주자”,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109017015#csidx0376e9f86484f91997a738ec43054af>, 2019.01.08

_____,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109017015#csidx0e4ecca779a9c4e83a1fc8731e74dfe>>, 검색일: 2019.07.21.

세계법제정보센터, “스위스. 반려견 주인 대상 의무교육 폐지”, <http://world.moleg.go.kr/web/dta/lgsITrendReadPage.do?CTS_SEQ=42963&AST_SEQ=47&ETC=>, 검색일: 2019.07.01.

_____, <<https://www.admin.ch/opc/fr/official-compilation/2016/4871.pdf>>, 검색일: 2019.07.01.

아시아 경제, “잇따른 반려동물 범죄-입양 교육 시급하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10921410173787>>, 검색일: 2019.01.10.

_____, “고양이 자두 살해범 강력 처벌하라” 동물학대 ‘숨방방이 처벌’ 개선될까”,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72415423869864>>, 검색일: 2019.07.25.

영국 입법정보, <<https://www.legislation.gov.uk/>>, 검색일: 2019.07.23.

전북일보, “동물 학대 늘어나는 사회, 길고양이 급식소가 반가운 이유”,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54718&sc_section_code=S1N8>, 검색일: 2019.07.27.

중앙일보, “유기견 안락사 없는 독일...개가 세금·버스비도 낸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313752>>, 검색일: 2019.01.23.

UPI뉴스, “세계최초로 동물보호법을 만든 영국”, <<https://www.upinews.kr/news/newsview.php?ncode=1065591243800395>>, 검색일: 2018.08.3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Seq=1294&ccfNo=1&cciNo=1&cnpClsNo=1>>, 검색일: 2019.07.21.

Franchise Help, “Pet Care Industry Analysis 2017 -Cost & Trend, 2017”, <<https://www.franchisehelp.com/industry-reports/pet-care-industry-analysis-2018-cost-trends/>>, 검색일: 2019.07.21.

LE TEMPS, “Les detenteurs de chiens sont liberes des cours”, <<https://www.letemps.ch/suisse/detenteurs-chiens-liberes-cours>>, 검색일: 2019.01.23.

[Abstract]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re-Compulsory Education System for Companion Animal Nurture

Lee, Jin-Hong*

Jang, Kyo-Sik**

The population raising pets was found to be raised by one out of four households with 10 million, affecting not only social and cultural aspects of life, but also related industries. With this increase in the number of child rearing population and the change in industry, various problems arise concerning the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pets, including abandonment and abuse. That is why opinions are being seriously raised about the introduction of a “pre-mandatory system for raising pets.”

More than 120,000 abandoned animals are occurring each year, and reports of abuse have been increasing, but they have not been eradicated due to light punishment. This is because pets are treated in law and people’s perception, not as ‘human and spiritual ties and affection,’ or toys, that is, animals that share emotional contacts and live together as a life.

The domestic legislation on companion animals stipulates the scope, management, and responsibility of pets in a number of individual laws, including the Veterinary Law, with the focus on animal protection law, but most laws are centered on punishment such as fines, and local governments are enacted and implemented with a few individual regulations under the mandate regulations

When looking at overseas cases, there is a well-developed sense of civic awareness and strict standard qualifications, education, writing and practical skills, and even certificates are required to nurture pets. They also have to pass a thorough screening process before and after childrearing, and even impose taxes to emphasize responsibility and duty.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education on the breeding

*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Science, 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Konkuk University

** Professor, Law School, Konkuk University

of pets in Korea and strive to foster the legal system and civic awareness in which pets are not discriminated against as creatures, not as property. The measures include first, realizing the legalization of the pre-medical education system for raising pets; second, introducing specialized educational institutions; third, expanding the number of dedicated personnel; fourth, strengthening the legal status of pets; and fifth, overall education tailored to the life cycle of pets.

[Key Words] Companion Animal, Compulsory Education, Nurture, Abandonment, Animal Protection Act